

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53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1년 8월 1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지역상생교류 사업 자문·심의를 위한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된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내용을 추가함(안 제9조).
- 나. 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,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9조의2).
- 다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

(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).

라.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(안 제9조의5).

마.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하되,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6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나.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현황

- 지역상생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는 「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에 따라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 촉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자문과 교류협력 사항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²⁾.

1) 종전에는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상생교류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을 대신하였으나, 상생교류사업의 확대 추세를 감안해 2020년 7월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신설하였음.

2) 제9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교류협력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
3. 지역 간 상생협력 위탁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여(1회 연장 가능) 서울시 관련 실·본부·국장, 시의원, 상생교류 사업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있음.
 - 현재 위원회는 총 12명(당연직 3명, 시의원 2명, 민간전문가 7명)으로 구성되어 민간전문가 출신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.
- 위원이 최초 위촉된 2020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상생사업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음.

< 위원회 개최 실적 >

연번	개최일자	참석인원	안 건
1	'20.12.15.	10명	·위원장 선출, 지역상생교류사업 보고 및 논의
2	'21.2.3.	7명	·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상생사업(포럼·박람회) 추진 자문
3	'21.4.12. ~ 4.14.	12명 (서면)	·서울-지방 연계 온라인 방과 후 학습지원 사업 추진 보고 ·'21년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진행경과 보고
4	'21.5.12.	5명	·포럼·박람회 착수보고 발표 및 행사 추진방향 자문

다. 위원회 운영 규정의 보완(안 제9조~안 제9조의6)

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”)에서는 서울시는 위원회 남설 방지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나 규칙 등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(제7조)³⁾.

- 위원회 필수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목적·기능·성격, 위원의 구성·임기, 결격사유 및 제척·기피·회피, 위원회 존속기한, 회의 소집 시기, 의사·의결정족수,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등을 명시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「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라 조례에서 누락된 위촉 위원의 성별균형(안 제9조 제3항),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대행(안 제9조의2)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9조의3)와 위원 해촉(안 제9조의4), 위원회 회의(안 제9조의5), 존속기한(안 제9조의6)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있음.

< 개정안의 규정별 세부내용 >

규정	세부내용
안 제9조③	·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.
안 제9조의2	·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함 ·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·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함.

- 3)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위원회의 설치절차 등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.
1. 설치 목적·기능 및 성격
 2. 위원의 구성 및 임기
 3. 존속 기한(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
 4. 위원의 결격사유, 제척·기피·회피(시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인가·허가,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
 5. 회의의 소집 시기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
 6.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
 7. 분과위원회,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안 제9조의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됨 ·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함.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. ·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함.
안 제9조의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해촉사유로, ① 위원이 희망한 경우, ② 장기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, ③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, 사적 이용, ④ 직무 관련 또는 위원직 유직에 부적합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, ⑤ 제척사유에 해당되어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, ⑥ 직무 태만,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함.
안 제9조의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위원회 회의는 ① 시장의 소집요구, ②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,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함 ·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.
안 제9조의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.

- 현재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기능, 임기 등 기본사항을 정하고, 이 외에는 「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9조제6항)4)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위원회 관련 필수 규정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위원회에 통용되는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위원 해촉 등 일반적인 사항까지 모든 조례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.

4)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위원회의 설치)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- 필수규정을 조례에 모두 반영하게 되면 위원회 관련 규정이 과다해지는 결과가 되므로, 개별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항 이외에는 「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에서 정하고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입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성만	2133-8055